

창원지방법원 2021. 4. 9 선고 2020나56763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창원지방법원 2021. 4. 9 선고 2020나56763 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 5. 13 선고 2018가단32544 판결

전 문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임석

피고, 항소인G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오성

변론 종결2021. 3. 12.

판결 선고2021. 4. 9.

제1심판결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 5. 13. 선고 2018가단32544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별지 목록 제1, 3, 5,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7/10은 원고가, 3/10은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망 E과 F 사이에 2017. 6.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F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등기와 2017. 6. 15. 접수 제3252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및 같은 등기와 2018. 5. 16. 접수 제2550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제18, 19, 20행을 삭제하고, 제5면 제5행 내지 제10행을 아래 '2. 고치는 부분'과 같이 고치며, 이에 따라 결론을 일부 달리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 취소의 범위는 공동담보의 보전에 필요하고 충분한 범위로 한정된다. 따라서 채무자가 사해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 채권자는 사해행위가 가분인 한 그중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자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하면 족하고, 그 행위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6209 판결 등).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도 취소를 구할 수 있는데(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3423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취소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61618 판결 취지 참조).

2) 판단

가) 제1심이 인정한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Z감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F에 대하여 대여금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인 2015. 7. 30.부터 변제일까지 '은행이자의 1.5배'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채권(이하 '이 사건 피보전채권'이라고 한다)¹⁾을 가지는 사실, 2019. 4. 30. 기준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은 788,252,000원(= 66,640,000원 + 138,768,000원 + 156,798,000원 + 109,917,000원 + 95,355,000원 + 220,774,000원), 그 중 별지 목록 제2, 4항 기재 각 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은 248,685,000원(= 138,768,000원 + 109,917,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 각 부동산의 가액은 당심 변론종결일 무렵에도 동일할 것으로 추인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른 처분행위(이하 '이 사건 처분행위'라고 한다)는 원고의 채권의 보전에 필요하고 충분한 범위 내로 취소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처분행위의 목적물이 불가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채권액을 넘어 취소할 수는 없고, 별지 목록 제2, 4항 기재 각 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은 248,685,000원으로 이 사건 피보전채권액을 상회하므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처분행위를 취소하는 것만으로도 원고의 채권을 보전하는데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²⁾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진주시 N 대 1250m² 및 지상 건물이 같은 날 같은 등기원인으로 F의 아들인 망 E에게 증여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이 사건 처분행위는 하나의 사해행위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처분행위를 하나의 사해행위로 보는 이상 사해성 여부도 일괄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사해행위의 취소 범위는 별개이고, 사해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일련의 재산처분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어 이를 일괄하여 전체로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보아야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일련의 재산처분행위를 분할할 수 있다면, 채권자의 채권액을 한도로 그 채권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범위의 재산처분행위만이 취소의 대상이 되고, 나머지 재산처분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사해행위취소권의 본질 및 그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채무자인 F의 다른 채권자들이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다거나 사해행위의 목적물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전부가 불가분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따라서 망 E과 F 사이에 별지 목록 제2,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F에게 별지 목록 제2,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등기와 2017. 6. 15. 접수 제3252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및 같은 등기와 2018. 5. 16. 접수 제2550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양상익

판사전보경

판사김희수

별지

1) 원고와 F이 작성한 차용증서(갑 제1호증)에는 '은행이자의 1.5배'의 비율로 계산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피보전채권액 중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액수가 명백하지 않으나,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하더라도 대여일인 2015. 7. 30.부터 당심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약 5년 7개월 간 발생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은 50,238,000원이 되고, 따라서 당심 변론종결 당시 이 사건 피보전채권액은 230,238,000원(= 180,000,000원 + 50,238,000원)이 넘는 것으로 보인다.

2) 사해행위취소 및 그 반환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채권자의 처분권주의의 적용을 받는데(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77891 판결 참조), 취소채권자인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취소해달라고 주장할 뿐 취소대상 부동산을 특정하는 것은 거부하였다. 그런데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에서 일탈한 재산을 회복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권리인 점(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24469 판결 등 참조), 채권자취소권제도는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거래의 동적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점(헌법재판소 2006. 11. 30. 선고 2003헌바66 결정, 헌법재판소 2007. 10. 25. 선고 2005헌바96 결정 등 참조), 취소의 범위를 원칙적으로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자신의 채권액을 한도로 제한하고 있는 취지 등을 고려해보면, 취소대상 부동산은 강제집행의 용이성과 피보전채권의 만족, 거래의 안전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별지 목록 제2, 4항 기재 각 부동산은 지목이 모두 전으로서 연결하고 있는 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과 연결하고 있으나 하천으로서 지목이 다른 점, 실제 위 각 부동산들이 강제집행이 되기까지 증가할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2, 4항 기재 각 부동산을 취소대상 부동산으로 정함이 상당하다.